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제2009-1068호  
**예고기간** : 2009. 12. 24~1. 13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02-2110-8269)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http://www.mltm.go.kr))

- **개정이유**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실제 시공실적보다 과다 평가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정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을 위해 산정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과다평가의 원인이 되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방안」 취지를 감안하여 기술능력항목 비중을 확대함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1918호  
**공포일자** : 2009. 12 30(수)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02-509-7412)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co.kr](http://www.mke.co.kr))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성이 낮은 전기용품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535호, 2009. 3. 25.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개선·파기 또는 수거 명령을 하는 경우를 사안별로 구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안내

- **법 률 : 제9875호**
- 공포일자 : 2009. 12 29(화)**
-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02-2110-8356)**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되, 이 법 외에 「주택법」,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등록 결격사유로 유지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 이외에 대여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기간 중에는 건설업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건설업자의 재산권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하며,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되,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두며,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6조의2 삭제)
- 나. 이 법, 「주택법」 및 건설업과 관련된 「형법」상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등록결격사유를 정함(안 제13조제1항)
- 다. 건설업 양도의 제한사유 중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처분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함(현행 제20조제4호 삭제, 제17조제2항 신설)
- 라. 자격증 대여 근절 및 자격증 대여에 따른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제8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3조제5호의2 신설)
- 마.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에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시킴(안 제35조)
- 바. 이 법 및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당 특약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및 제81조제5호의2 신설)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 령 : 제2009-448호  
예고기간 : 2009. 11. 27 ~ 12. 17  
담당부서 : 에너지관리과(02-2110-3945)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co.kr)

## 개정이유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현행 1개 품목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평균효율관리기자재 :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제1항)

## 주요내용

가.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현행 1개 품목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3개 품목 추가)

- 현행 1개 품목("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3개 품목(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을 추가하여, 총 4개 품목을 평균효율관리기자재로 규정

나. 추가되는 3개 품목에 대한 시행일을 전기냉방기는 2010년 10월1일부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는 2011년 10월1일부터로 함

## ◆ 아름다운 명언



빈스 럽바르디

일단 하나의 인생길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후원을 받는 셈이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힘이라 부른다.  
일단 이와 같은 헌신을 하면  
그 무엇도 성공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Once a man has made  
a commitment to a way of life,  
he puts the greatest strength  
in the world behind him,  
It's something we call heart power.  
Once a man has made this commitment,  
nothing will stop him short of success.

#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정부) 사례

• 주상복합건물의 단일 사업승인건으로 공동주택 1400세대와 건축물 연면적이 110,000㎡인 경우 감리원배치기준(운영요령 제25조)에 의하면

• 공동주택300세대이상, 건축물연면적(10,000㎡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과 건축물중 감리원배치인 원수가 많은 부분을 적용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 1400세대는 감리원 특급 보조1명 비상주1명)이고 (건축물연면적 110,000㎡는 감리원 특급1명보조2명비상주1명)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배치기준” 제4호 다목에 따라 ①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이상이고 ②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경우에는 ①공동주택과 ②건축물 부분 각각에 대해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산출한 후, 그 감리원배치인원수가 많은 부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의 내용과 같으므로 감리원배치인원수가 많은 건축물 부분의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책임 1명, 보조 2.5명(고급 1명 이상), 비상주 1명  
(인터넷민원질의, 2008. 5. 14)

• 2. 집공고 입찰서류를 작성하고(김포시 공고 제 2008-813호)입니다.

- 별첨 제4호 서식 자기평가서 - II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역의 5번 항목의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항목에서 6개미만의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4점으로 만점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예정인 5개 현장에 3개 현장은 이미 협회에 배치신고를 한 진행중인 현장이고, 2개 현장은 계약을 완료하고 배치예정이나 아직 공사착공이 되지 않아 협회에 배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3개 현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 5개 현장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싶네요.

- PQ고시 [별표 3] 제1호다목(업무중첩도) 중 (※)에서는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7-159호, 2007.12.31)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2개 현장이 PQ고시에 따라 선정된 경우라면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는 5개 현장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체빈도 평가와 동일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6. 3)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3호중(별표3)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의 계산에서 공사중지 기간이 있는 용역의 경우 수행실적 산정방법에서 공사중지 기간을 감리수행기간에만 적용하는지 전체 공사기간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3호(별표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나목 유사용역수행실적에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인정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2호에서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 준공실적 : (최근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 전체공사기간×연면적(m<sup>2</sup>))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산식에서 전체공사기간과 감리수행기간은 실제 전기공사기간과 실제 감리수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기공사중지기간과 감리용역 중지기간은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7. 23)

4 운영요령 제45조, 제46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관리소장으로 발전실, 송강기, 소방전기설비, 저수조등 안전관리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또한 2004년, 2005년 등 경력인정을 받은 관리소장님이 있는 반면 현재 제의 관리소장의 안전관리 경력은 불인정 한다고 합니다.

• 협회는 운영요령 제45조 [경력기준등 전력기술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 행정, 서무등 비 전력기술업무분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 또한 고시의 사생활 침해가 있는 인사기록카드나, 직원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많은 민원인에게 절차적으로 이중, 삼중의 요구로 인하여, 대기비용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나, 관련법에 의한 서류제출로 단순화 하여 주시고, 제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 다만,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안전관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45조제2항에서 "전력기술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경력산정 시 다수의 자격증, 학력, 경력 중에서 전력기술인의 등급을 상위등급으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 제40조제2항제1호에서는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4대 보험확인서로 하되,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인사기록부 등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5. 22)

생활속 법령상식

## 임차인이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승계한다.



글 \_ 박종복 변호사

**Q** 본인은 약 10여년전 남편을 만나 그동안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 왔다. 최근 남편이 사망하자 그동안 왕래가 없던 남편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약은 남편과 집주인 사이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체결되어 있다. 임대보증금은 누가(남편 아들? 본인?) 받게 되는가?

**A** 결론적으로 귀하가 임대보증금을 받게 된다.

먼저 임차권도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인(남편의 아들)에게 상속된다. 한편 귀하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상속권이 없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임차권은 단순한 재산권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임차인 및 그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사회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현행 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제2항에는 임차인(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상속권자(남편의 아들)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귀하)와 2촌 이내의 친족(귀하의 경우는 해당없음)은 공동으로 임차인(남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귀하 남편의 집주인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 3,000만원은 귀하가 혼자 승계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